

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의안 번호	21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5. 6. 27.

발 의 자 : 정형식 의원외 2인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계룡시의회의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제17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임.

2. 주요골자

- 계룡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. 7. 8 ~ 7. 14 (7일간)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계룡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함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7조.
- 계룡시의회의회의규칙 제69조
- 계룡시의회에출석·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